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실버튼 | 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계약 등】

-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는 전자문서로 발송 및 서명을 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및 제공자 정보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6. 이동서비스 안전 수칙 등
- ④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 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염과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 ⑤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의 세부 내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

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 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 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제3조 【이용료 납부】

-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 청구를 한다.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내용】

-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 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인지활동지원
 4. 인지정서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조 【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다.

제2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센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3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 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본 문서는 기관 운영규정에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에 관한 사항」, 「서비스 내용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기관 운영규정의 일부로 관리됩니다. 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관 운영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별표 1]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

1. 이용시간별 급여 비용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자지원등급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13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이상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3. 비급여 비용

단위: (원)

항목	수가	산정기준
식사비	4,500	1식 기준(중식 및 석식 제공)
간식비	1,500	1식 기준(오전간식 및 오후간식 제공)

※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비급여 비용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한다.